

※ [별첨-1] 전형단계별 우대(가점부여 등) 기준

전형 단계	우대 기준	비고
서류 전형	<p>[가점부여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장애인 : 가점 5점 ※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대상자</li> <li>• 비수도권 지역인재 : 가점 3점 ※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 / 세부기준 참고[별첨-2]</li> </ul>	<p>만점 100점 한도 내에서 가점 부여</p>
면접 전형	<p>[가점부여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장애인 : 가점 5점 ※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대상자</li> </ul>	<p>만점 100점 한도 내에서 가점 부여</p>

※ 국가유공자의 경우, 관련법(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)에 의거, 법정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최종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, 최종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의 경우 법정가점 미부여